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

심의일자	2019.4.9(화)		
사업명/신청위치	자양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/ 광진구 자양동 236번지 일대		
의결번호	2019-05-2	심의결과	보류의결

〔심의 내용〕 건축 심의

▣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,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추후 본위원회에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.

▣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「건축법」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.

〈 건축 분야 〉

□ 건축계획

○ 아파트 2개동 최상층을 브릿지로 연결하여 스카이라운지로 설치하는 것은 주변여건상, 도시경관상, 도시맥락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주민공동시설(스카이커뮤니티)은 단일동에 설치하는 방안(대안3)으로 검토 바람.

- 고층부 주민공동시설 내 별도 비상계단 설치 등 피난계획을 검토 바라며, 입주후 유지관리 계획도 사전 검토 바람.

○ 근린생활시설 화장실 계획 추가 보완 바람.

○ 외부에서 진입하는 비상차량출입 동선이 과다하여 인접도로변 보행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출입개소를 간결하게 정리 바람.

○ 지하1~2층 주차장의 지하램프 주변 채광 환기를 위한 천창계획 개선 바람.

□ 구조

○ 설계에 적용되고 있는 구조기준이 KBC2009으로 구조물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KBC2016 적용 검토 바람.

- 계속 -

2019.4.9.

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

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

심의일자	2019.4.9(화)		
사업명/신청위치	자양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/ 광진구 자양동 236번지 일대		
의결번호	2019-05-2	심의결과	보류의결

〔심의 내용〕 건축 심의

〈 건축 분야 〉(계속)

□ 조경(권장)

○ 어린이놀이터 3개소, 주민공동시설, 휴게소가 분산배치되어 있으므로 외부공간 계획의 주요 개념을 설정하고, 개념에 맞고 스토리가 있는 공간이 되도록 계획 바람.

○ 미세먼지 저감방안으로 미세먼지의 흡착·흡수 지수가 높은 수목 식재 바람.

○ “주민운동시설1”의 운동시설 하부 포장은 탄성포장으로 반영하고, 운동공간 주변으로 휴게시설 추가 설치 바람. 끝.

2019.4.9.

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